

 보건복지부		보 도 참 고 자 료	
배 포 일	2021.4.5 / (총 4매)	담당부서	아동학대 대응과
과 장	박 은 정	전 화	044-202-3380
담 당 자	유 경 성		044-202-3448

즉각분리제도 시행(3.30) 이후 분리아동보호 현황

- 4.5(월) 0시 기준, 응급조치 9건 및 즉각분리 1건 발생, 피해아동은 쉼터 등에서 보호 중

□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지난 3월 30일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된 이후, 응급조치사례 9건과 즉각분리사례 1건이 발생하였고, 피해아동들은 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밝혔다.

○ 지자체 및 경찰에서는 학대피해가 확인되고, 재학대 위험이 급박한 9건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해당 아동들을 일시보호시설 등에 보호하였다.

○ 또한,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(접근금지, 전기통신금지)를 받은 친부가 이를 위반하여 아동에게 접근하고, 현장 조사시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하는 사례가 신고되어,

- 관할 지자체에서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즉각분리* 후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으며, 피해아동의 상담, 건강검진, 심리검사와 임시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**를 진행할 예정이다.

*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제1호(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) 및 제3호(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·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) 적용

** 아동학대처벌법 제59조제1항(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)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.

-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“즉각분리제도 시행 이후, 지자체,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학대 피해 의심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다”라며,
- “앞으로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즉각분리제도가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회복을 돕는 제도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- <참고> 1. 즉각분리제도 개요
2. 아동학대처벌법 ‘응급조치’ 활용한 보호시설 인도 기준

참고 1

즉각분리제도 개요

□ 제도 개요

- 응급조치*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

* 그간 재학대 위험 급박·현저한 경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를 통해 72시간 분리보호

□ 분리 후 보호 절차

- 즉각분리 필요 시 아동 의사 확인(동의서 작성) → 쉼터 등 보호 시설 이동 → 7일 이내 추가 조사·건강검진·심리검사로 학대여부 판단
- (①장기 보호조치 필요 시) 지자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 조치 결정하여 보호시설에서 생활,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양육상황 정기 점검 → 가정복귀 가능 시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이행으로 안전 확보(2~3개월) 후 복귀
- (②장기 보호조치 불필요 시) 상담, 가정 점검 후 가정 복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

구분	응급조치	즉각분리(일시보호)
근거	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	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
주체	경찰, 전담공무원	전담공무원(아보전)
요건	학대범죄현장 또는 학대현장 이외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·현저한 경우 등 응급조치 요건 충족 시	응급조치에 이르지 않는 사안으로 재학대 우려, 면밀한 조사 필요 등 즉각분리 요건 충족 시
기간	72시간 이내 * 임시조치가 청구된 경우 법원 결정시까지	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
비고	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	응급조치는 하지 않았으나 즉각분리가 필요한 경우

참고 2

아동학대처벌법 '응급조치' 활용한 보호시설 인도 기준

다음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시설로 인도하며, 2회 이상 재신고 된 경우, 의료인 등의 신고에는 보호시설 인도를 적극 고려함

- ▶ 아동학대행위자 외 피해아동 등을 보호해 줄 성인이 없는 경우
- ▶ 아동학대행위자 외 피해아동 등을 보호해 줄 성인의 보호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
 - ※ 아동학대행위자의 접근을 만연히 허용할 여지가 있는 경우 등
- ▶ 피해아동이 처한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있는 경우
 - ※ 깨진 술병, 상한 음식, 전선 돌출, 낙상 위험이 있는 가옥구조 등 물리적 환경의 위험도를 확인하도록 하며, 36개월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방치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한다.
- ▶ 피해아동 등이 아동학대위자와 격리되어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원하는 경우
- ▶ 피해아동 등이 부모·양육자를 두려워하거나 집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경우
- ▶ 학대가 알콜이나 약물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
- ▶ 아동학대행위자가 처방된 치료를 거부하고 잔인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
- ▶ 의료인 등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명, 상흔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
- ▶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심한 명,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
- ▶ 재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명, 상흔 등이 발견되는 경우 우선 조치
- ▶ 그 외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는 경우